

202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직원(사무직6급-고졸인재) 채용 공고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직 종	직 급	채용인원	시험과목
제한경쟁	사무직	6급	2명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5개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2.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 직무내용

구 분	직 종	직 급	직 무 내 용
제한경쟁	사무직	6급	·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 일반사무 및 행정 운영 등

※ 상세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간 견습근무와 평가를 거쳐 정규직 6급으로 최종 임용

나. 근무조건

1) 근무지: 경북농민사관학교 (경상북도 문경시 창리강변길 45)

※ 임용 후 배치결정, 추후 보직인사에 따라 근무지(예천, 문경) 변경될 수 있음

2) 보수 및 복리후생: 기관 내부 인사규정에 따름

3) 직급체계: 1~6급으로 구성

3.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200점 만점, 50문항(문항당 4점) 4지 선택형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필기시험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나. 2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 여부 심사(적격자 전원 합격)

다. 3차 시험(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라.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 우선 임용 대상자 선정

4. 응 시 자 격

가.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경상북도 공공기관 고졸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기준」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추천일 현재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라. 성 별 : 제한없음

※ 본 채용공고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하며, 견습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추천여부와 졸업요건에 관하여는 재학 중인 각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일 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6.7.1.(수) ~ 7.13.(월)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필기시험 장소 공고 및 응시표 출력		'26. 7. 13.(월)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 등
1차 시험	필기시험	'26. 7. 18.(토)	필기시험 장소(경상북도 내)
	합격자 발표	'26. 7. 22.(수)	진흥원 홈페이지
2차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7. 24.(금)	진흥원 홈페이지
3차 시험	면접시험	'26. 7. 30.(목)	경북농민사관학교
최종합격자 발표		'26. 7. 31.(금)	진흥원 홈페이지
임용(견습직원)		'26. 8. 10.(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1) 접 수 처: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 지원자는 소속 고등학교를 통해 지원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는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 2) 접수기간: 2026. 7. 1.(수) ~ 7. 13.(월)

나. 접수 시 유의사항

- 1) 개인별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 2) 지원자는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를 통해 제출

다. 제출서류

- 1) 지방공공기관 기능인재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 6) 결격사유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1부
-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 1부
- 8)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주소이력 포함)
- 9) 자격증 사본, 수상실적 등 각 1부 (필요시 제출)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기준일: 채용공고일 전일)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면접전형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5% 또는 3% (면접전형 적용)	

나. 취업지원대상자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2)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2)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 기간 내에 증서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가. 운영방법: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운영
- 나. 예비합격자 규모: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 다.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 제출서류의 필수 기재사항 및 응시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자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다.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마. 시험지는 가져갈 수 없으며 시험종료 즉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바.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임용포기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일 경우 재공고 하고, 재공고 시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응시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아.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합니다.
 -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만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됩니다.
- 자.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채용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 공고합니다.
-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영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650-1170)